

민원 신청 내용

상세내용 접기

민원종류

일반민원

제목

위험물 안전관리조례 관련 문의

내용

수고하십니다.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관련하여 문의사항 몇가지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.

1.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정수량의 1/5이상, 1배수 이하일 경우 관련 시설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예로 3층짜리 건물에 각 층마다 실험실이 있다면

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

1-1) 3개층 실험실 모두의 합산수량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면 각 실험실마다 1/5이하로 관리하면되는지?

1-2) 시설을 갖추지 않고 1/5이하로 위험물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시설보완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.

2. 3층짜리 건물의 각 층마다 실험실에 조례에 따른 시설을 갖춘경우 각 실험실 마다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되어 1배수 이하로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.

3. 관련법령 5조 옥내에서의 저장취급의 경우 1/5이하로 관리하면 소량위험물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데 1/5이하로 관리하는 곳은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을

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

처리기관 정보

상세내용 접기

처리기관

경기도 (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)

처리기관 접수번호

2AA-2407-0132021

접수일시

2024-07-03 16:02:17

담당자(연락처)

송광심 (031-230-2892)

처리예정일

2024-07-11 23:59:59
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2024-07-11 15:40:02

처리결과

(답변내용)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1AA-2407-0098049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'건축물 내 분리된 공간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·취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저장·취급량 산정방법'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3.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려는 경우 「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」 제2조,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중 소량위험물*을 저장 및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「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」 제2조, 제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, 옥내에서 저장·취급하는 경우 추가로 제5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* 지정수량 1/2 이상(현재), 1/5이상('24.9.21.시행) ~ 지정수량 미만

나. 건축물 내 별개의 실에 위험물 저장·취급 시 저장·취급량 산정기준은 각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실(장소)이 「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」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별로,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 저장·취급하고자 하는 전체 위험물의 양이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예정인 경우 관할 소방서에 제조소등 설치신고 및 허가절차 이후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합니다.

다. 참고사항으로 화학실험을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 ~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건축물 내에 설치 및 허가가 가능한 화학실험실의 특례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해당 답변은 위험물을 제조·취급·저장하고자 하는 용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소방교 송광심(☎031-230-2892)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붙임 민원신청서 1부.

만족도평가 가능일시

2024-10-11 15:40:02

첨부 파일